

대법원 2023도18089
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사)등 사건

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895)

대법원 3부(주심 대법관 노정희)는,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낮 시간에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, 상고를 제기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(어린이보호구역치사)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(위험운전치사), 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운전)을 유죄로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(도주치사)을 무죄로 각 인정하고,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(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3도18089 판결)

1. 사안의 개요

가. 공소사실의 요지

- ▣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(어린이보호구역치사)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(위험운전치사)
 - 피고인은 2022. 12. 2. 16:57경 차량을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.128%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하던 중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
- ▣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(도주치사)
 -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 후 역과하였는데도 즉시 정차하여

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음

▣ 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운전)

-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.128%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

2. 소송경과

▣ 제1심

-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(어린이보호구역치사)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(위험운전치사), 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운전) 부분 유죄 ⇒ 모두 실제적 경합 ⇨ 징역 7년
-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 부분 무죄

▣ 원심

-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 파기 ⇨ 징역 5년,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
- 원심의 유·무죄 판단 이유 ⇨ 유·무죄 판단은 제1심과 동일하고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(어린이보호구역치사)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(위험운전치사)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
 -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(어린이보호구역치사)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(위험운전치사), 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운전) - **유죄**
 -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
 -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(도주치사) - **무죄**
 -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
-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, 법리오해 및 유죄 부분에 대

한 죄수판단을,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사에 관한 법리오해,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함

3. 대법원의 판단

가. 쟁점

- ▣ 피고인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
- ▣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
- ▣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(어린이보호구역치사)죄와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(위험운전치사)죄의 죄수 관계

나. 판결 결과

- ▣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

다. 판단 내용

- ▣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
 -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(도주치사)죄의 성립,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
- ▣ 피고인의 상고이유 관련
 -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(위험운전치사)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
 -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부적법한 상고이유임